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 람	기관의 장

제2297호
2026년 8월 6일
목요일

공 고

○ 공 고 제 1474 호 「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문화 관광 과 2
입법예고 및 의견수렴

고 시

○ 고 시 제 120 호 도시계획시설(도로: 간석동 중로2-137호선)사업 도시 재 생 과 12
실시계획 인가 실효 고시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6-1474호

「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6. 8. 6.

남동구청장**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**1. 개정이유**

- 남동구 소년소녀합창단을 신설하여 아동·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구립예술단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예술단 구성원의 정의 신설 : (안 제2조제7호)
- 소년소녀합창단 신설 및 자격요건
: (안 제24조제2항 ~ 제24조제4항, 제25조제2항)
- 단원의 자격 단서조항 수정 : (안 제25조제1항)
- 단무장의 직무 신설 : (안 제26조제4항)
- 그 밖에 용어 축약 및 수정 등
: (안 제26조제1항, 제26조제3항, 제29조제3항, 제29조제4항, 제30조제1호, 제31조제2항, 제32조제3항)

3. 입법예고기간 : 2026. 8. 6. ~ 8. 26. (20일간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(문화관광과장)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의견 보내실 곳

- 주 소: (21589)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(만수동) 남동구청 문화관광과
- 연 락 처: 전화 453-2132 FAX 453-2139
- 남동구 홈페이지(<https://www.namdong.go.kr>)
(※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)

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월 일

제 출 자 : 남 동 구 청 장

☐ 제안이유

- 예술단 구성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신설하고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·청소년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·육성하고 건전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한편, 각종 문화행사 및 공연을 통해 구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복지 증진,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☐ 주요내용

- 예술단 구성원의 정의 신설 : (안 제2조제7호)
- 소년소녀합창단 신설 및 자격요건
: (안 제24조제2항 ~ 제24조제4항, 제25조제2항)
- 단원의 자격 단서조항 수정 : (안 제25조제1항)
- 단무장의 직무 신설 : (안 제26조제4항)
- 그 밖에 용어 축약 및 수정 등
: (안 제26조제1항, 제26조제3항, 제29조제3항, 제29조제4항, 제30조제1호, 제31조제2항, 제32조제3항)

☐ 본 문 : “별첨”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첨”☐ 참고자료

남동구 조례 제 호

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“예술단 구성원”이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, 반주자, 훈련장, 성악지도자, 단무장 및 단원을 말한다.

제24조제2항 중 “풍물단”을 “풍물단, 소년소녀합창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여성합창단”을 “여성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소년소녀합창단에는 성악지도자 1명, 단무장 1명을 둘 수 있다.

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분야별 단원은 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(학교)이 구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, 반주자, 훈련장, 성악지도자, 단무장은 예외로 한다.

- ② 소년소녀합창단은 9세 이상 15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예술감독 및 지휘자, 반주자, 훈련장, 단원”을 “예술단 구성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훈련장은”을 “훈련장 및 성악지도자는”으로, “개인 기술을 지도하고, 단원”을 “단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

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단무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의 원활한 운영과 단원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9조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성악지도자, 단무장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예술감독 또는 지휘자, 반주자, 훈련장 및 단원”을 “예술단 구성원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1호 중 “예술감독 또는 지휘자, 반주자, 훈련장 및 단원”을 “예술단 구성원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2항 중 “예술감독 또는 지휘자, 반주자, 훈련장 및 단원”을 “예술단 구성원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3항 중 “예술감독 또는 지휘자, 반주자, 훈련장, 그 밖의 단원”을 “예술단 구성원”으로 한다.

제35조 본문 중 “남동구”를 “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6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“ <u>예술단 구성원</u> ”이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, 반주자, <u>훈련장</u> , <u>성악지도자</u> , <u>단무장</u> 및 <u>단원</u> 을 말한다.
제24조(구성) ① (생략) ② 예술단에는 여성합창단, <u>풍물단</u> 등을 둘 수 있다. ③ 예술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 <u>여성합창단</u> 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1명, 반주자 1명,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, <u>풍물단</u> 은 예술감독 1명, <u>훈련장</u> 1명,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. <u><신설></u>	제24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풍물단</u> , <u>소년소녀합창단</u> ----- -----. ③ ----- ----- <u>여성합창단</u> 및 <u>소년소녀합창단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④ <u>소년소녀합창단</u> 에는 <u>성악지도자</u> 1명, <u>단무장</u> 1명을 둘 수 있다.
제25조(단원의 자격) <u>단원은 남동구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구민으로 한다.</u>	제25조(단원의 자격) ① <u>분야별 단원은 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(학교)이 구에 있는 사람으로</u>

다만,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, 반주자, 훈련장은 예외로 한다.

<신 설>

제26조(단장과 단원의 직무) ① 단장은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술감독 및 지휘자, 반주자, 훈련장,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.

② (생략)

③ 훈련장은 단원 연습 및 개인 기술을 지도하고,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④·⑤ (생략)

제29조(단원의 위촉) ①·② (생략)

③ 기타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부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④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, 반주자, 훈련장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한다. 다만,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, 반주자, 훈련장, 성악지도자, 단무장은 예외로 한다.

② 소년소녀합창단은 9세 이상 15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.

제26조(단장과 단원의 직무) ① -

-- 예술단 구성원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훈련장 및 성악지도자는 --
----- 단원

--.

④ 단무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의 원활한 운영과 단원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⑤·⑥ (중전의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
제29조(단원의 위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성악지도자, 단무장 및 ----
-----.

④ 예술단 구성원-----

-----.

⑤ (생 략)

제30조(단원의 해촉) (생략)

1.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, 반주자, 훈련장 및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사람

2. ~ 4. (생 략)

제31조(예산의 지원) ① (생 략)

②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, 반주자, 훈련장 및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2조(위탁관리) ①·② (생 략)

③ 예술단의 운영을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재단 대표이사가 그에 따른 사무를 대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,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대표이사가 단장이 되고 제29조, 제30조에 따라 재단의 대표이사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, 반주자, 훈련장, 그 밖의 단

⑤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단원의 해촉) (현행과 같음)

1. 예술단 구성원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예산의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예술단 구성원-----

-----.

제32조(위탁관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예술단 구성원-----

<u>원</u>을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다. ④ (생 략) 제35조(축제개최) 구청장은 <u>남동</u> <u>구</u>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·관광 발전 및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을 위하여 축제를 개최할 수 있 다.	-----. ④ (현행과 같음) 제35조(축제개최) ----- <u>구</u> ----- ----- ----- -.
---	---

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그 밖의 문제점		
부서별 의견			
협의개요	부 서	제출의견	검토내용

고 시

남동구 고시 제2026-120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: 간석동 중로2-137호선)사업 실시계획 인가 실효 고시

도시계획시설(도로: 간석동 중로2-137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 실효 고시합니다.

2026. 8. 6.

남 동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-9번지 외 1필지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: 간석동 중로 2-137호선)
- 명칭: 간석동 중[국] 2-137 가감속 차로공사

3. 사업규모

- 가감속차로 L=101.2m, B=3.7m, A=444.9m²/ 도로재포장 A=1,044.8m²

4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
- 성명: 도기산, 오민섭
- 주소
 - 도기산: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124
 - 오민섭: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272

5.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

○ 2022. 4. 28. ~ 2025. 12. 31.

6. 실효 사유: 사업 시행기간 만료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
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

○ 따로 붙임

[별첨1] 용지조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관계	
1	간석동	3-9	전	7,628.0	132	도**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**번길 **	산곡2, 4동새마을금고	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***번길*(산곡동)	근저당권자	
						오**	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***번길 **			지상권자	
2	간석동	3-12	도	5,931.7	1,357.7	남동구청	-	-	-	-	-
합 계				13,559.7	1489.7						

[별첨2] 지장물조서

구분	소재지	지번	물건의 종류	구조 및 규격	단위	수량	비고
1	간석동	3-12	수목	벚나무	주	1	
2			소화전	-	EA	1	
3			표지판	1,200×1,600×60	EA	1	
4			한전주	8721X011	EA	1	
5			체신주	8721X011	EA	2	LG U+
				-			-
6			가로등	만월로 좌-01~04	EA	4	